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5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조정훈·최수진·박충권

조경태 · 박형수 · 김예지

이철규 • 유상범 • 권성동
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,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음.

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 ·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 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 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 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3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교육비"를 "교육비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교육비에 100분의 1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교육비로 한다)"로 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중 "어린이집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(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)"를 "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"로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③
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	
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	
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	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	
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	
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	
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	
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	<u>.</u>
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	
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・	1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	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	
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	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	
교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	교육비(초등학교 취학 전 아

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한다.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체육시설에 지급한교육비(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)

<신 설>

<u>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</u>
우에는 지급하는 교육비에 1
00분의 160을 곱하여 계산한
금액을 그 교육비로 한다)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라
<u>어린이집에 지급</u>
한 교육비

마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

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 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2. · 3. (생략)

④ ~ ① (생 략)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① (현행과 같음)